일반 사항

Q. 2021년도 교육 실시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시설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21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Q. 교육점검 일정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올해 하반기에 점검할 계획이며, 별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공문으로 점검결과 제출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21.6.30일 시행을 감안하여 장애인학대 발생이 높은 기관 등 일부기관에 대해 교육실시 점검을 하반기에 할 계획이며, 그 외의 기관도 추후 점검시기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추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향후 점검방법 등 점검계획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점검방법 예시)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전체 신고의무자 중 교육 이수자 수 등 간소화하여 점검할 예정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 등

Q. 교육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타 공공/민간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가 있나요?

A. 영상 제작 추진 중에 있으며, 제작 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등 게재할 예정입니다.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포함된 별도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관 내 직원 등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수강이 어려울 경우 서면교육 진행으로도 교육실시 인정이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제4항에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서면 자료 배포만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이 같은 교육인가요?

A.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각각 다른 교육으로 각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아동 · 노인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해도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교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육실시 할 경우,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중 위 교육과 공통되지 않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여부

Q.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규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③ 삭제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